

# ◎ 農地制度

## ○ 現行: §122

第 122 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農業生產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한 賃貸借 및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 民正黨: §120

現行과 같음

## ○ 民主黨: §117

第 117 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禁止된다. 다만, 不可避한 事情으로 發生되는 小作農地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適切한 措置를 한다.

○ 農地의 小作은 耕若有田의 대원칙이 따라 지켜져야 할 것이나 오늘날 農村人口의 감소와 產業構造의 高度化의 따라 農業機械化 대지 企業的 產農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農業以 農村의 繁榮에 매우 중요한 要素임. 이에 따라 국회는 農地賃貸借小作制度를 제정하여 1987. 10. 1부터 施行하려 하고 있음.

○ 民主黨案의 T불가피한 사정으로 「禁止」하는 小作農地는 ... T適切한 조치를 취하라는 표현은 法律表現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